

선 람	기관외 장



제4호(호외) 2022. 2. 8.(화)

조 례

광양시 조례 제1892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광양시 조례 제1893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광양시 조례 제1894호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9
광양시 조례 제1895호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	13
광양시 조례 제1896호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광양시 조례 제1897호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광양시 조례 제1898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광양시 조례 제1899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규 칙

광양시 규칙 제886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3
광양시 규칙 제887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5
광양시 규칙 제888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48

광양시 규칙 제889호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20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55

광양시 규정 제421호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57

관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2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0명”을 “1,1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39명”을 “1,1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1,176</u>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40</u>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u>1,065</u>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160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139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1명</u></p> <p>[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국</th> <th>직 속 기관</th> <th>사 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1,16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 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1,124</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4급</td><td>10</td><td>4</td><td>1</td><td>2</td><td>3</td><td></td></tr> <tr><td>5급</td><td>63</td><td>27</td><td>2</td><td>8</td><td>14</td><td>12</td></tr> <tr><td>6급 이하</td><td>1,049</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급상당 이하</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관</td><td>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직 계</td><td>29</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관</td><td>2</td><td></td><td></td><td>2</td><td></td><td></td></tr> <tr><td>지도사</td><td>27</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 업 소	읍.면 동	총 계	1,160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4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4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176명</u> ----- -----.</p> <p>1. ----- <u>1,151명</u></p> <p>2. ----- <u>25명</u></p> <p>[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국</th> <th>직 속 기관</th> <th>사 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1,176</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 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1,14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 <tr><td>4급</td><td>10</td><td>4</td><td>1</td><td>2</td><td>3</td><td></td></tr> <tr><td>5급</td><td>63</td><td>27</td><td>2</td><td>8</td><td>14</td><td>12</td></tr> <tr><td>6급 이하</td><td>1,06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급상당 이하</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관</td><td>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td><td>5</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직 계</td><td>29</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관</td><td>2</td><td></td><td></td><td>2</td><td></td><td></td></tr> <tr><td>지도사</td><td>27</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 업 소	읍.면 동	총 계	1,17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0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65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 업 소	읍.면 동																																																																																																																																																																																																																																																							
총 계	1,160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4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4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 업 소	읍.면 동																																																																																																																																																																																																																																																							
총 계	1,176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0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63	27	2	8	14	12																																																																																																																																																																																																																																																							
6급 이하	1,065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5																																																																																																																																																																																																																																																												
연구관	0																																																																																																																																																																																																																																																												
연구사	5																																																																																																																																																																																																																																																												
지도직 계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광양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3호

붙 임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6조 제3항 관련)

보건소·보건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광 양 시 보 건 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 양 시 전 역
광 양 시 도 시 보 건 지 소	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	동 지 역 일 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
광 양 시 보 건 소 중 마 통 합 보 건 지 소	광양시 중동로 42(중동)	동 지 역 일 원
골 약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	광양시 성황3길 19	골 약 동 일 원
광 영 건 강 생 활 지 원 센 터	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	광 영 동 일 원
광양시보건소 봉강보건지소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	봉 강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옥룡보건지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	옥 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옥곡보건지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	옥 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진상보건지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	진 상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진월보건지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2	진 월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다압보건지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	다 압 면 일 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보건소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제3항 관련)	[별표1] 보건소 · 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제3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보건소·보건지소명</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h style="width: 33%;">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광 양 시 보 건 소</td> <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td> <td>광 양 시 전 역</td> </tr> <tr> <td>광양시도시보건지소</td> <td>광양시 담안2길 16-15 (태인동)</td> <td>동 지역 일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td> </tr> <tr> <td>광 양 시 보 건 소 중·마·통합보건지소</td> <td>광양시 중동로 42(중동)</td> <td>동 지역 일원</td> </tr> <tr> <td>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td> <td>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td> <td>광 영 동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강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td> <td>봉 강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룡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td> <td>옥 룡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곡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td> <td>옥 곡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상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td> <td>진 상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월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안길 32</td> <td>진 월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압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td> <td>다 압 면 일 원</td> </tr> </tbody> </table>	보건소·보건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광 양 시 보 건 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 양 시 전 역	광양시도시보건지소	광양시 담안2길 16-15 (태인동)	동 지역 일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	광 양 시 보 건 소 중·마·통합보건지소	광양시 중동로 42(중동)	동 지역 일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	광 영 동 일 원	광양시보건소 강 보 건 지 소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	봉 강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	옥 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	옥 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상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	진 상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월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안길 32	진 월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압 보 건 지 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	다 압 면 일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보건소·보건지소명</th> <th style="width: 33%;">위 치</th> <th style="width: 33%;">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광 양 시 보 건 소</td> <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td> <td>광 양 시 전 역</td> </tr> <tr> <td>광양시도시보건지소</td> <td>광양시 담안2길 16-15 (태인동)</td> <td>동 지역 일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td> </tr> <tr> <td>광 양 시 보 건 소 중·마·통합보건지소</td> <td>광양시 중동로 42(중동)</td> <td>동 지역 일원</td> </tr> <tr> <td>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td> <td>광양시 성황3길 19</td> <td>골 약 동 일 원</td> </tr> <tr> <td>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td> <td>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td> <td>광 영 동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강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td> <td>봉 강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룡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td> <td>옥 룡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곡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td> <td>옥 곡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상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td> <td>진 상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월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안길 32</td> <td>진 월 면 일 원</td> </tr> <tr> <td>광양시보건소 압 보 건 지 소</td> <td>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td> <td>다 압 면 일 원</td> </tr> </tbody> </table>	보건소·보건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광 양 시 보 건 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 양 시 전 역	광양시도시보건지소	광양시 담안2길 16-15 (태인동)	동 지역 일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	광 양 시 보 건 소 중·마·통합보건지소	광양시 중동로 42(중동)	동 지역 일원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성황3길 19	골 약 동 일 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	광 영 동 일 원	광양시보건소 강 보 건 지 소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	봉 강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	옥 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	옥 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상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	진 상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월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안길 32	진 월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압 보 건 지 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	다 압 면 일 원
보건소·보건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광 양 시 보 건 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 양 시 전 역																																																																				
광양시도시보건지소	광양시 담안2길 16-15 (태인동)	동 지역 일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																																																																				
광 양 시 보 건 소 중·마·통합보건지소	광양시 중동로 42(중동)	동 지역 일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	광 영 동 일 원																																																																				
광양시보건소 강 보 건 지 소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	봉 강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	옥 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	옥 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상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	진 상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월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안길 32	진 월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압 보 건 지 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	다 압 면 일 원																																																																				
보건소·보건지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광 양 시 보 건 소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 양 시 전 역																																																																				
광양시도시보건지소	광양시 담안2길 16-15 (태인동)	동 지역 일원 (단, 방문보건사업은 광양시일원)																																																																				
광 양 시 보 건 소 중·마·통합보건지소	광양시 중동로 42(중동)	동 지역 일원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성황3길 19	골 약 동 일 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금영로 127(광영동)	광 영 동 일 원																																																																				
광양시보건소 강 보 건 지 소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1	봉 강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15	옥 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곡 보 건 지 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8	옥 곡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상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32	진 상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월 보 건 지 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안길 32	진 월 면 일 원																																																																				
광양시보건소 압 보 건 지 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7	다 압 면 일 원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1.)에서 의결된 **광양시청,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4호

붙임 :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제2조 중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별표의 제목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기관명란 중 “골약동주민센터”를 “골약동사무소”로, “중마동주민센터”를 “중마동사무소”로, “광영동주민센터”를 “광영동사무소”로, “태인동주민센터”를 “태인동사무소”로, “금호동주민센터”를 “금호동사무소”로 하며, 소재지란 중 “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을 “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②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③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④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위치) <u>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u></p> <p>[별표] <u>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기 관 명</th> <th style="width: 80%;">소 재 지</th> </tr> </thead> <tbody> <tr><td>광 양 시 청</td><td>광양시 시청로 33(중동)</td></tr> <tr><td>광양읍사무소</td><td>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td></tr> <tr><td>봉강면사무소</td><td>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td></tr> <tr><td>옥룡면사무소</td><td>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td></tr> <tr><td>옥곡면사무소</td><td>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td></tr> <tr><td>진상면사무소</td><td>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td></tr> <tr><td>진월면사무소</td><td>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td></tr> <tr><td>다압면사무소</td><td>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td></tr> <tr><td><u>골약동주민센터</u></td><td><u>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u></td></tr> <tr><td><u>중마동주민센터</u></td><td><u>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u></td></tr> <tr><td><u>광영동주민센터</u></td><td><u>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u></td></tr> <tr><td><u>태인동주민센터</u></td><td><u>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u></td></tr> <tr><td><u>금호동주민센터</u></td><td><u>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u></td></tr> </tbody> </table>	기 관 명	소 재 지	광 양 시 청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읍사무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봉강면사무소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	옥룡면사무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	옥곡면사무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	진상면사무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	진월면사무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	다압면사무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	<u>골약동주민센터</u>	<u>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u>	<u>중마동주민센터</u>	<u>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u>	<u>광영동주민센터</u>	<u>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u>	<u>태인동주민센터</u>	<u>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u>	<u>금호동주민센터</u>	<u>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u>	<p style="text-align: center;"><u>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u>----- ----- -----.</p> <p>제2조(위치) <u>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u>----- -----.</p> <p>[별표] <u>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기 관 명</th> <th style="width: 80%;">소 재 지</th> </tr> </thead> <tbody> <tr><td>(생 략)</td><td>(현행과 같음)</td></tr> <tr><td><u>골약동사무소</u></td><td><u>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u></td></tr> <tr><td><u>중마동사무소</u></td><td>(현행과 같음)</td></tr> <tr><td><u>광영동사무소</u></td><td>(현행과 같음)</td></tr> <tr><td><u>태인동사무소</u></td><td>(현행과 같음)</td></tr> <tr><td><u>금호동사무소</u></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기 관 명	소 재 지	(생 략)	(현행과 같음)	<u>골약동사무소</u>	<u>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u>	<u>중마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u>광영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u>태인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u>금호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기 관 명	소 재 지																																																										
광 양 시 청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읍사무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봉강면사무소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46																																																										
옥룡면사무소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																																																										
옥곡면사무소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56																																																										
진상면사무소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																																																										
진월면사무소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																																																										
다압면사무소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3																																																										
<u>골약동주민센터</u>	<u>광양시 수동길 2(성황동)</u>																																																										
<u>중마동주민센터</u>	<u>광양시 중마중앙로 119(중동)</u>																																																										
<u>광영동주민센터</u>	<u>광양시 정수2길 47(광영동)</u>																																																										
<u>태인동주민센터</u>	<u>광양시 담안2길 16-15(태인동)</u>																																																										
<u>금호동주민센터</u>	<u>광양시 희망길 50(금호동)</u>																																																										
기 관 명	소 재 지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u>골약동사무소</u>	<u>광양시 성황6길 15(성황동)</u>																																																										
<u>중마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u>광영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u>태인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u>금호동사무소</u>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5호

붙임 :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인권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양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과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시민인권헌장 제정) 시장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광양시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인권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시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읍면동의 인권촉진자로서 생활현장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교육 실시)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인권증진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인권지킴이,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6호

붙임 :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광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광양시의회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u>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u>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u></p> <p>③ <u>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u></p>	<p>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u>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1. <u>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u></p> <p>2. 「<u>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및 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5조 (생 략)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광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광양시의회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7호

붙 임 :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제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기관·출연기관”을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투자기관·출연기관”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기 또는 장기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 시장·부시장, 투자기관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제10조 중 “법 제17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 업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의 제목“(위원의 책무)”를“(비밀준수의 의무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시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
산·결산 및 기금 운영

2. 시의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시·투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 및 부시장, 시의회의장
및 부의장, 투자기관·출연기
관의 장의 기관 운영 및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 7. (생략)

②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
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
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
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
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
----- 운영

2. ---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

3. 집행기관-----

4. 시장·부시장, 투자기관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
비 사용내역

5. ~ 7. (현행과 같음)

②-----
-- 어느 하나에 -----

-----.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 1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 -----
-----중장기계획-----

2. ~ 12.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0조(비용의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④ 시 소속공무원중 총무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 업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신 설>

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2(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체육시
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8호

붙 임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양시 체육시설 (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양공설운동장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경기장면적 23,500㎡ 건축 2,230㎡ 관람석 7,980석	우레탄트랙 400m/ 8레인 천연잔디구장 1면 등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경기장면적 1,218㎡ 건축 4,292㎡ 관람석 1,662석	배드민턴코트 9면 배구코트 2면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
광양수영장	광양시 봉강면 명암길 7	부지면적 21,203㎡ 건축 6,094㎡ 50m 10레인 관람석 1,000석	수영장 샤워실, 사우나실, 매점 및 휴게실, 운영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방송 전기시설, 음향시설 기계, 전기, 발전실 등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95-9	부지면적 9,285㎡ 건축 2,275.12㎡ 관람석 216석	다목적체육관, 론볼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가족 샤워실, 의무실, 체력측정실, 시각탐구실, 방송실, 발전실, 전기실, 사무실 등
축구전용1구장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경기장면적 12,500㎡ 건축 288㎡ 관람석 430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트랙 140m/6레인
축구전용2구장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경기장면적 10,850㎡ 건축 288㎡ 관람석 430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동1축구장	광양시 무등길 90(마동)	부지면적 15,897㎡ 건축 507㎡ 관람석 671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마동2축구장	광양시 무등길 90(마동)	부지면적 11,561㎡ 관람석 1,462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동1풋살구장	광양시 무등길 90(마동)	경기장면적 1,488㎡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마동2풋살구장	광양시 무등길 90(마동)	경기장면적 1,488㎡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광영축구장	광양시 광영동 1089	부지면적 52,121㎡ 건축 261㎡ 경기장면적 9,087㎡ 관람석 522석	인조잔디축구장 1면 본부석, 조명시설
광영풋살장	광양시 광영동 1089	경기장면적 924㎡	인조잔디풋살구장 1면 조명시설
우산공도장 (유타도장)	광양시 광양읍 우산공원길 74-1	부지면적 3,190㎡ 건축 387㎡	과녁 4
광영공도장 (백운도장)	광양시 광영큰골길 85 (광영동)	부지면적 9,935㎡ 건축 196.11㎡	과녁 3
중마공도장 (마로도장)	광양시 가야로 65(마동)	부지면적 17,880㎡ 건축 720㎡	과녁 4
광양시립테니스장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부지면적 8,842㎡ 건축 171.71㎡	테니스코트 8면 조명 1식
마동테니스장	광양시 마동 1188	부지면적 4,320㎡	테니스코트 6면 조명 1식
광양시립정구장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11	부지면적 3,674㎡ 건축 49.5㎡	코트 4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u>제2호부터 제14호까지</u>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u>국가, 전라남도, 시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공익을 위하여 경기 및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u></p> <p>2. <u>전국단위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u></p> <p>3. ~ 8. (생략)</p> <p><u><신설></u></p> <p>10. ~ 14. (생략)</p> <p>② (생략)</p>	<p>제25조(사용료 감면) ① ----- ----- ----- ----- ----- ----- <u>제3호</u> ----- ----- ----- -----</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u></p> <p><u><삭제></u></p> <p>3. ~ 8. (현행과 같음)</p> <p>9.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u>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u></p> <p>10. ~ 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광양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 21.)에서 의결된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조례 제1899호

붙 임 :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략)</p> <p>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p>	<p>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p>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86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87호

붙임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매실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하부조직) ① (생 략)</p> <p><u>② 농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매실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u></p>	<p>제10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u>② 농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매실원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u></p>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88호

붙임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액급여

(단위: 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반 주 자	1,439,000
	악보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158,000
	단 무 장	1,293,000
	반 주 자	1,293,000
	성악지도담당	1,293,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2,878,000
	단 무 장	1,439,000
	악 장	1,439,000
	연희악장	1,439,000
	악기기획담당	1,439,000
	단 원	1,091,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액급여 (단위:원)			[별표 2] 월액급여 (단위: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2,838,000	시립합창단	지 휘 자	<u>2,878,000</u>
	단 무 장	1,419,000		단 무 장	<u>1,439,000</u>
	반 주 자	1,419,000		반 주 자	<u>1,439,000</u>
	악보기획담당	1,419,000		악보기획담당	<u>1,439,000</u>
	단 원	1,075,000		단 원	<u>1,091,000</u>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128,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u>2,158,000</u>
	단 무 장	1,275,000		단 무 장	<u>1,293,000</u>
	반 주 자	1,275,000		반 주 자	<u>1,293,000</u>
	성악지도담당	1,275,000		성악지도담당	<u>1,293,000</u>
시립국악단	지 휘 자	2,838,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u>2,878,000</u>
	단 무 장	1,419,000		단 무 장	<u>1,439,000</u>
	악 장	1,419,000		악 장	<u>1,439,000</u>
	연희악장	1,419,000		연희악장	<u>1,439,000</u>
	악기기획담당	1,419,000		악기기획담당	<u>1,439,000</u>
	단 원	1,075,000		단 원	<u>1,091,000</u>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칙 제889호

붙 임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1조제2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없다.</p> <p><u>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u> <u>를 받은 자</u></p> <p>2. 3. (생략)</p>	<p>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 --- ----- ----- -----.</p> <p><u>1. 피성년후견인</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 주사가</u> 된다.</p> <p>③ (생략)</p>	<p>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업무담당 팀장이</u> -----.</p> <p>③ (현행과 같음)</p>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정 제420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규정 제421호

붙임 :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팀 명칭

구 분	부 서	팀 명 칭	비고	
본 청	기 획 예 산 실	기획, 예산, 국도비, 평가분석, 의회법무		
	전 략 정 책 실	인구정책, 청년정책, 신산업		
	감 사 실	감사, 조사, 설계심사		
	홍 보 소 통 실	홍보, 소통, 미디어		
	총무국	총 무 과	서무, 시정, 인사, 문서통계, 후생	
		세 정 과	세정, 부과,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 과표, 세무조사	
		회 계 과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민 원 지 적 과	민원, 지적관리, 지가조사,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차량등록	
		정 보 통 신 과	정보기획, 행정정보, 스마트도시, 통신, 공간정보	
	경제복지국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시장관리, 노사협력	
		투 자 일 자 리 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철 강 항 만 과	제철항만, 국제협력, 해양수산, 수산유통	
		주 민 복 지 과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자원봉사	
		노 인 장 애 인 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관광문화 환경국	관 광 과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관광단지	
		문 화 예 술 과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문예회관	
		체 육 과	체육진흥, 체육시설, 체육시설운영1, 체육시설운영2	
		환 경 과	환경정책, 환경지도, 기후환경, 수질환경	
		자 원 순 환 과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생활환경	
	안전도시국	안 전 총 괄 과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 통합관계	
		건 설 과	건설행정, 농촌활력, 농촌개발, 농업기반	
		도 시 재 생 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재생전략, 재생시설, 도시경관	
		도 로 과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 통 과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관리	
		건 축 과	건축행정, 공동주택허가, 공동주택관리, 건축지도	
		허 가 과	건축허가1, 건축허가2, 산지농지전용, 개발행위	

구 분	부 서	담 당 명 칭	비 고	
직속기관	보 건 소	보 건 행 정 과	보건행정, 의약, 감염병대응, 감염병관리 재택치료관리	
		건 강 증 진 과	건강증진, 정신건강, 치매관리	
		통 합 보 건 과	중마보건, 출산지원, 광영건강, 골약건강	
		식 품 위 생 과	위생민원, 위생지도, 음식문화	
		도 시보 건 지 소	도시보건, 방문보건, 진료소지원	
	농업기술센터	농 업 지 원 과	농정, 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	
		농산물마케팅과	마케팅전략, 농식품가공, 생활자원	
		매 실 원 예 과	매실정책, 원예특작, 유통지원	
		산 립 소 득 과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소득	
		기 술 보 급 과	기술지원, 미래농업, 식량작물, 도시농업	
사업소	교 육 보 육 센터	교 육 보 육 과	교육지원, 보육, 평생학습, 육아지원센터	
		아 동 친 화 도 시 과	아동친화, 아동보호 , 청소년, 드림스타트, 테마파크	
		여 성 가 족 과	여성친화, 가족돌봄, 여성일자리, 여성문화센터	
		도 서 관 운 영 과	도서관지원,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금호도서관	
	물 관 리 터 센터	상 수 도 과	상수도행정, 급수, 시설, 용강정수장, 마동정수장	
		하 수 도 과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관리	
		하 수 처 리 과	중앙하수, 광양하수, 진월하수, 광영하수, 태인폐수	
		생 활 폐 기 물 과	관리, 자원화	
	산 단 녹 지 터 센터	택 지 과	택지행정, 택지개발, 택지지원	
		산 단 과	산단행정, 국가산단, 일반산단	
		공 원 과	공원행정, 공원조성, 공원관리1, 공원관리2	
		녹 지 과	녹지행정, 도시녹화, 도시정원, 가로수	
		시 설 관 리 과	시설관리, 가로등, 경관조명, 기반시설	
	휴 양 립 사 업 소		휴양림관리, 휴양림시설	
	읍면동	광 양 읍	총 무 과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주 민 과			민원, 환경관리	
개 발 과			산업, 건설도시	
읍면동		봉 옥 강 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옥 룡 통 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옥 곡 곡 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진 상 상 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진 월 월 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다 압 압 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골 약 약 동	총무, 맞춤형복지	
		중 마 마 동	총무, 주민생활지원, 맞춤형복지, 민원, 환경관리	
		광 영 영 동	총무, 맞춤형복지	
		태 인 인 동	총무, 맞춤형복지	
		금 호 호 동	총무, 맞춤형복지	